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
2019. 12. 6(금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(복지교육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(안)

1. 개 관

이 기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,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.

2.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[단위 : 천원]

2019년도 말 조성액 (A)	2020년도 운용계획			2020년도 말 조성액(A+B)
	수 입	지 출	증 감 (B)	
345,382	6,378	7,360	△982	344,400

○ 수입계획

- 공공예금 이자수입 6,378천원

○ 지출계획

-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2,580천원

- 행사실비지원금 4,500천원

- 사무관리비 280천원

3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안은

1999년 설치 이후 예치금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져 왔으며
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3억 4,538만 2천원임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

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3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며

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258만원, 서울시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금 450만원

기금심의위원회수당 28만원으로 총 736만원입니다.

-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, 2020년도 사업 내용 및 기금 편성액을 살펴 볼 때에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며, 다만,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, 관련부서에서는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이 필요하다 봄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노인복지법」 [시행 2019. 7. 16.] [법률 제16243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제2조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
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. <개정 2016.7.18>

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<개정 2016.7.18>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<개정 2016.7.18>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의 수입금 <개정 2016.7.18>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
 2.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
 3. 전통문화 선양
 4.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
 5.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
 6.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
 7.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
 8.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-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7.18>